

심사보고서

2022. 2. 1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5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과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강남구청의 정원 조정(안 제2조)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비 고
정원의 총수	1,757	1,770	+13	
집행기관의 정원	1,724	1,731	+7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	39	+6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별표 3)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총 계	1,757	1,770	+13명
일반직 계	1,747	1,762	+15명
5급	72	74	+2명
6급이하 소계	1,661	1,674	+13명
별정직 계	9	7	△2명
5급 상당 소계	4	3	△1명
6급상당 이하 소계	5	4	△1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2022년도 편성 예산집행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2.31. ~ 2022.01.20.)

-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견제출(2022.01.14.)
 의회사무국(기관) 정원조정 내용 : 일반직 6급이하 6명 증원
 [정책지원관 5명(22년 채용인력) /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1명]

【조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 제4항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121(2021.10.28.)호]

-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견 수용

입법예고안	수 정 안(의견 반영)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764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770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731명	1. ----- 1,7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2. ----- <u>39명</u>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현재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1,757명에서 1,770명으로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집행기관의 정원	1,724명	<u>1,731명</u>	+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명	<u>39명</u>	+6명
정원의 총수	1,757명	<u>1,770명</u>	+13명

- 직급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은 일반직 5급(1명), 일반직 6급이하(6명), 총 7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는 일반직 5급(1명), 일반직 6급이하(7명) 총 8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5급(△1명), 별정직 6급△(1명) 총 2명을 감원하려는 것임.
- 집행기관의 증원 사유를 살펴보면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신설¹⁾에 따라 부서장 5급 1명, 팀장 1명, 7급이하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의회사무기구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²⁾에 따른 정책지원관 7급 이하 5명을 증원하였고, 전문위원 5급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정직 5급 1

1)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신설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의결 필요.

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상계조정) 하였음. 또한 6급 전문위원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별표5)에서 정한 정수에 맞도록 조정²⁾하기 위해 별정직 6급 1명을 감원한 것이며, 감원된 인력을 정책지원관 관리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

일반 5급 / 별정 5급	일반 6급 / 별정 6급	일반 7급 이하	증원
+2명 / △1명	+2명 / △1명	+11명	+13명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규정”) 제23조제4항³⁾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정원계획은 1,779명, 제출한 정원 조례안은 1,770명으로 계획의 범위 안의 증원으로 적절해 보임.

○ 참고로 정원규정 제36조⁴⁾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의회 권한에 일부 제한이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외의 부분 중 “1,757명”을 “1,770명”으로 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별표5)

지방의원 정수 -25명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전문위원 정수는 5급 3명, 6급이하 2명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별표)에는 6급 전문위원이 행정 또는 별정 1명, 별정 2명으로 1명이 초과한 상황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724명” 을 “1,731명” 으로 하고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명을 39명으로 하며 별표 3 집행기관란 중 일반직 5급 1명 증원, 6급이하 소계란의 1,635명을 1,641명으로 6명 증원하려는 것이고, 의회사무기구란 중 별정직 5급상당 1명 감원 및 일반직 5급 1명 증원(상호 상계조정), 별정직 6급상당 1명 감원 및 일반직 6급1명 증원으로 일반직 6급이하 소계란의 26명을 33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것임.

□ 정원 변동내역 총괄 : 1,757명 → 1,770명 (+13)

(단위 : 명)

구 분	업무 및 내용	배정부서(안)	인원수
총 계			13
2022년 기준인력 (국가정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강남구의회	5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정책지원관 관리인력)	강남구의회	1
지역여건 등 행정수요 변화예측 인력	중대재해예방 전담 조직	중대재해예방실	7

- 직렬별 및 부서별 인력 증원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별 및 부서별 인력 증원 내역>

직렬별 구분	증감 정원수	증 원 사 유
총계	+13명	
일반직	+15명	중대재해예방실장(+1명) 【중대재해예방실】 중대시민재해팀장(+1명) 중대재해예방 실무 인력(+5명) 정책지원관(+5명) 【구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관리인력(+1명) 전문위원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일반5급 상계조정(+1명) 6급 별정직 전문위원 정수 조정에 따른 일반직 증원(+1명)
별정직	△2명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효율적 운영에 따른 별정5급 상계조정(△1명) 6급 별정직 전문위원 정수 조정(△1명)

○ 정원 증원 사유를 살펴보면

- 2022.1.27.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신설 예정에 따라 전담조직 운영 인력7명 증원
-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2년 기준인력에 따른 정책지원관 및 정책지원관 5명, 관리인력 1명 증원
- 그 밖의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별정 5급을 일반 5급으로 상계조정, 6급 별정 직 전문위원 정수조정은 과대산정된 정수를 정원규정에 맞게 바로 잡으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1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1. 제안이유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과 중대재해 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구의 정원 조정(안 제2조)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비고
정원의 총수	1,757	1,770	+13	
집행기관의 정원	1,724	1,731	+7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	39	+6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별표 3)

내용	현행	개정	비고
총계	1,757	1,770	+13명
일반직계	1,747	1,762	+15명
5급	72	74	+2명
6급이하 소계	1,661	1,674	+13명
별정직계	9	7	△2명
5급상당 소계	4	3	△1명
6급상당 이하 소계	5	4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편성 예산집행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2.31. ~ 2022.01.20.)

-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견제출(2022.01.14.)
의회사무국(기관) 정원조정 내용 : 일반직 6급이하 6명 증원
[정책지원관 5명(22년 채용인력) /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1명]

【조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 제4항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121(2021.10.28.)호]

-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견 수용

입법예고안	수 정 안(의견 반영)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764</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770</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731명	1. ----- 1,7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현행과 같음</u>)	2. ----- <u>39명</u>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57명”을 “1,7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24명”을 “1,73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3명”을 “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 기구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70	1,731			39
정무직		1	1	-		-
일반직	계	1,762	1,727			35
	2급	1	1	-		-
	4급	8	6	1	-	1
	5급	74	39	12	22	1
	6급 이하 소계	1,674	1,641			33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별정직	계	7	3	-		4
	5급상당	3	1	-		2
	6급상당 이하 소계	4	2	-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75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72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3명</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25조 ----- -----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770명</u> ----- -----.</p> <p>1. ----- <u>1,731명</u></p> <p>2. ----- <u>39명</u></p>

신 · 구별표대비표

현							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보건소	동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1,757	1,724			33	총 계		<u>1,770</u> (+13)	<u>1,731</u> (+7)			<u>39</u> (+6)
정무직		1	1	-		-	정무직		1	1	-		-
일반직	계	1,747	1,720			27	일반직	계	<u>1,762</u> (+15)	<u>1,727</u> (+7)			<u>35</u> (+8)
	2급	1	1	-		-		2급	1	1	-		-
	4급	8	6	1	-	1		4급	8	6	1	-	1
	5급	72	38	12	22	0		5급	<u>74</u> (+2)	<u>39</u> (+1)	12	22	<u>1</u> (+1)
	6급 이하 소계	1,661	1,635			26		6급 이하 소계	<u>1,674</u> (+13)	<u>1,641</u> (+6)			<u>33</u> (+7)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전문경력관 소계	5	5	-		-
별정직	계	9	3	-		6	별정직	계	<u>7</u> (Δ2)	3	-		<u>4</u> (Δ2)
	5급상당	4	1	-		3		5급상당	<u>3</u> (Δ1)	1	-		<u>2</u> (Δ1)
	6급상당 이하 소계	5	2	-		3		6급상당 이하 소계	<u>4</u> (Δ1)	2	-		<u>2</u> (Δ1)

[별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회사무기구 및 중대재해대응 전담 부서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변동 : 정원 13명 증원

5급	6급(행정직)	7급이하(행정직, 임기제 등)	비고
+1명	+1명	+11명	

II. 비용소요 내역

- 총 13명

구분 (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산출근거
총 계	1,022,272	
○인건비	816,520	∙ 5급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상한액 기준 ∙ 6급은 25 호봉 기준 ∙ 7급은 16 호봉 기준
5 급	87,542	
6 급	73,841	
7 급	655,137	
- 기본급	570,046	
- 정근수당	40,646	∙ 5 급 : <기본연봉에 포함> ∙ 6 급 : 4,213,900원 × 1명 × 2회 × 50% = 4,213,900원 ∙ 7 급 : 3,312,000원 × 11명 × 2회 × 50% = 36,432,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108,341	∙ 5 급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로 제외> ∙ 6 급 : 12,321원 × 1명 × 12개월 × 67시간 = 9,906,084원 ∙ 7 급 : 11,130원 × 11명 × 12개월 × 67시간 = 98,433,720원
- 정액급식비	21,840	∙ 5 급 : 140,000원 × 1명 × 12개월 = 1,680,000원 ∙ 6 급 : 140,000원 × 1명 × 12개월 = 1,680,000원 ∙ 7 급 : 140,000원 × 11명 × 12개월 = 18,480,000원
- 명절휴가비	48,776	∙ 5 급 : <기본연봉에 포함> ∙ 6 급 : 4,213,900원 × 1명 × 2회 × 60% = 5,056,680원 ∙ 7 급 : 3,312,000원 × 11명 × 2회 × 60% = 43,718,400원
- 연가보상비	26,871	∙ 5 급 : 82,295,000원 × 1/12 × 1명 × 20일 × 78% × 1/30 = 3,566,117원 ∙ 6 급 : 4,213,900원 × 1명 × 20일 × 86% × 1/30 = 2,415,969원 ∙ 7 급 : 3,312,000원 × 11명 × 20일 × 86% × 1/30 = 20,887,680원
○물건비	25,440	

구분 (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산출근거
- 직급보조비	25,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 : 250,000원 × 1명 × 12개월 = 3,000,000원 、 6 급 : 165,000원 × 1명 × 12개월 = 1,980,000원 、 7 급 : 155,000원 × 11명 × 12개월 = 20,460,000원
○이전경비	180,312	
5 급	14,119	
6 급	16,355	
7 급	149,838	
- 성과상여금	4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 : <기본연봉에 포함> 、 6 급 : 3,133,160 × 125% × 1명 = 3,916,450원 、 7 급 : (2,663,909원 × 152.5% × 4명) + (2,663,909원 × 125% × 5명) + (2,663,909원 × 105% × 2명) = 38,493,485원
- 연금부담금	7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 : 90,541,117원 × 9% = 8,148,701원 、 6 급 : 79,735,883원 × 9% = 7,176,230원 、 7 급 : 714,089,285원 × 9% = 64,268,036원
- 국민건강보험금	3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 : 90,541,117원 × 3.495% = 3,164,412원 、 6 급 : 79,735,883원 × 3.495% = 2,790,756원 、 7 급 : 714,089,285원 × 3.495% = 24,957,421원
- 연금지급금	27,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 : 90,541,117원 × 3.0972% = 2,804,239원 、 6 급 : 79,735,883원 × 3.0972% = 2,469,580원 、 7 급 : 714,089,285원 × 3.0972% = 22,116,773원

Ⅲ. 5년간 비용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세입	시비 소계(a)					
세출	인건비	816,520	832,687	849,174	865,988	883,135	4,247,504
	물건비	25,440	25,944	26,457	26,981	27,515	132,338
	이전경비	180,312	183,882	187,523	191,236	195,022	937,976
	소계(b)	1,022,272	1,042,513	1,063,155	1,084,205	1,105,672	5,317,817
총비용(b-a) (구비 소요액)		1,022,272	1,042,513	1,063,155	1,084,205	1,105,672	5,317,817

※ 월봉금액 인상률 최근 5년간 평균 1.98% 적용

Ⅳ. 작성자 : 총무과 인사팀 행정7급 이호승 (☎ 02-3423-5176)